##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59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이용선・김문수・허 영

박용갑・김 윤・허성무

박희승 • 이재강 • 채현일

오세희 · 강준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.

그런데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, 그 결과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 이는 국적의 다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조치이며, 「재외동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 른 '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'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.

이에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(안 제5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5조(재외동포체류자격의	부여)	제5조(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)
① ~ ③ (생 략)	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
		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
		부여할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
		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
		<u>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</u>
		<u>아니 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